순천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



[시행 2023.3.3] [순천대학교학교규정 제1127호, 2023.3.3, 일부개정]

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61-750-6131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?국가연구개발혁신법? 상 '국가연구개발사업'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(원) 문화 정착을 위해, 학생연구자 처우,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본 규정은 ?국가연구개발혁신법?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학위과정·석사학위과정·학석사통합과정·박사학위과정·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1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2.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- 3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

제 2 장 책임과 의무

제3조(산학협력단의 의무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- 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
- 4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(별지 제1호 서식) 체결, 상해·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?연구실안전법?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
- 5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- 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
- 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
- 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지급,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

제5조(학생연구자의 의무)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- 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
- 2.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
- 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

제6조(연구실 운영기준 마련)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, 졸업요건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 3 장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

- 제7조(연간 활용계획 수립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,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 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**제8조**(연구참여확약 체결) 산학협력단장,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(또는 학년)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주제 및 분야, 참여과제명, 연구수행내용, 역할,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
 - 2.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
 - 3.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불가
- **제9조**(연구참여확약 변경)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 - 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 - 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및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**제10조**(업무범위 제한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·외 기여·봉사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.
- 제11조(학업·연구권 보장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부당업무 거부권 보장)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 4 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
- 제13조(학생인건비 지급기준)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 - 1. 학사과정 : 월 1,300,000원
 - 2. 석사과정 : 월 2,300,000원
 - 3. 박사과정 : 월 3,200,000원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제116조 제1항에 따라「학술진흥법」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[별표 7]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.
 - ③ 지원기관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학생인건비 기준단가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.
- **제14조**(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)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, 균등 지급 체계 마련,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,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·기술료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**(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 참 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상률이 100%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6조(학생인건비 지급)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17일 학생연구자 개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항(과제협약 및 연구비 입금지연 등의 사유)이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후 지급일을 변경하여 소급·지급할 수 있다.
 -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학적이 변동(졸업, 학위 변경, 휴학, 제적 등) 되거나 계상률이 변경될 경우 매월 10일까지 연구참여확약 변경에 관한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학생인건비 관리)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,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**제18조**(자체 점검)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학생인건비관리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19조**(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)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
 -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 5 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
- 제20조(인격권 보장)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.
- **제21조**(건강과 휴식 보장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**제22조**(안전 보장)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**제23조**(재정운영 정보 공개)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**제24조**(고충·상담 창구 운영)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고충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대학 내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 - ③ 제1항의 상담 내용이 ?인권센터 규정?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인권센터로 이관하여 관련 절차에 따른다.
- 제25조(위반 시 조치)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이 규정을 위반 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(별지 제4호)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단은 고충·상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생연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산학협력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,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, 학생연구자 정원(TO)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관련 부서에 신속하게 요청하여야 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1076호,2021.9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및 지침의 적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순천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·지침」을 준용한다.

부 칙<제1127호, 2023.3.3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